

2021년도 제17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21건(안건번호 제2021-76268호~7667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제2021-76268호(순번 1번)는 블로그에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시물 하단에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제2021-76269호~76274호(순번 2번~7번)는 웹하드 및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작권법 제3조에 의하여 외국 저작물도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76275호~76276호(순번 8번~9번)는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 파일이 게시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자막 파일을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점, 자막 파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필요하고 자막파일과 불법복제 영상물이 서로 결합하여 해당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게 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6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7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22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출판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어문저작물의 텍스트 파일(.txt)을 직접전송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2013. 8. 14. 작성되었으며, (댓글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152개의 댓글 중 마지막으로 작성된 댓글은 2020. 6. 13.일자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3개 게시물, 총 8개 어문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워링크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원저작물은 2007. 3. 종이책으로 최초 발간된 어문저작물로, 저작물 자체의 최초 공표는 이보다 앞섰을 것으로 추정됨. 전자출판물은 2020. 6. 20.부터 ©©©©©©를 통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시물 하단에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전자출판물 서비스를 시작한 2020년 이전인 2013년에 게시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참고로 해당 저작물의 종이책은 총 두 번에 걸쳐 발간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C 위원: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요건이 충족되어 가결 의견임.
- A, B, E, D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7번은 1명의 익명의 민원인과 1명의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및 블로그에서 우리나라 방송물과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각각 제공하고 있는 사인임. 총 게시물 수는 61건임.
(순번 2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의 4화를 12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한화 전체 분량인 약 66분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6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블로거가 해당 저작물의 1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약 23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작권법 제3조에 의하여 외국 저작물도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공중에 이용에 전송한 사안으로 가결 의견임.
- C, B, E, D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7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번~9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영상물 없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 파일만 게시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4건임. (순번 8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6화를 영상물 없이 자막 파일만 제공하고 있으며, (순번 9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8번과 유사하게, 해당 저작물의 6화를 영상물 없이 자막 파일만 전송하고 있음. 2개의 블로그 내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애니메이션 및 자막 파일 이외에 다른 게시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막 파일을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점, 자막 파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필요하고 자막파일과 불법복제 영상물이 서로 결합하여 해당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게 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

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검토보고서상 각 블로그에서 현재 심의대상 자막 파일을 포함하여 다수의 자막 파일을 제공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순번 8번의 블로그 게시판 '○○○'를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게시판에는 심의일 기준 총 1,591개의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음. (일본 애니메이션 '○○○ ○○○ ○○○'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6화를 영상물 없이 자막 파일만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배너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순번 9번의 블로그 게시판 '○○○○○○○'을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게시판에는 심의일 기준 총 230개의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으며, (일본 애니메이션 '○○○○○○○ ○○○ ○○○'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8화를 영상물 없이 자막 파일만 제공하고 있음. 다수의 배너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E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심의 기준에 따라 적극적 요소를 인정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A, B, C, D 위원: 이견 없음.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9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0번~40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16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3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90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함. 2018. 4. 12.에 개봉한 해외 영화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00원에 대여, 5,500원에 구매 가능함. (방송 '체르노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44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체르노빌'을 20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미국 HBO에서 2019. 5. 6.부터 2019. 6. 3.까지 총 5회 방영하였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화당 1,100원에 대여, 1,650원에 구매 가능함. (게임 '천수의 사쿠나히메 Sakuna: Of Rice and Ruin'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8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천수의 사쿠나히메 Sakuna: Of Rice and Ruin'를 54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11 . 11.에 발매한 PC 게임이며, PC 게임 유통플랫폼 스팀 사이트에서 38,360원에 구매 가능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10번~40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40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6268호~76670호(순번 1번~40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7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7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1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